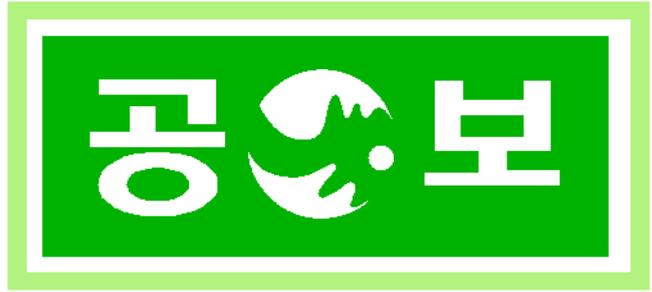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716 호 2011. 11. 7(월)

공 고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687호[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기초기준 변경 공고] 2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68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694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69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6

연 번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87호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기초기준 변경 공고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기초기준공고」(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3-236호, 2003. 7. 11)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0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다 음-

- 1. 제 목 :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물 기초 기준공고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전역
- 3. 공고 내용 : 2층 이상 모든 건축물(철골조 및 조립식건축물 제외)은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 5.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거시판
- 6.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19-7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688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0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가발생한 경우, 여진 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제3조(적용범위)
 -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복구 권내 소재하는 시설물)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지진으로 상당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 위험도평가단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 제6조(입기 및 해촉)
 - 단원의 입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 본부장은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험도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
 -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사전 정보 파악하고
 -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순위 정함
-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위험도평가 완료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본부장에게 제출
-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 시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 지원요청
- 제11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 최우선 고려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11. 7 ~ 11.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방재과장, 21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자료

- 울산광역시 북구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6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개정취지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동 시설이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미화과, 전화 219-7383, 팩스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의 관련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처리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구청장, 구의원은 정무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규정되어 삭제
- 나. 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복적 업무 취급에 공정한 처리에 영향유 미치지 않은 경우 승인
- 다.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 2)**
 -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은 위해 필요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음
- 라. 다른 법령준용규정 신설(안 제10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준용

3.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법 제 18조, 제18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28(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마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전화 052-219-7205, 팩스 219-721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는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3gu.ulsan.kr>) 및 공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